학사행정/제 2 장 학생행정 학생생활규정

(최종개정일 2023.3.1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설립정신에 따라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건전한 학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이 지켜야 할 제 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학내생활

제2조(생활) 학생은 학내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대학생으로서 품행을 바르게 하고,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2.학생은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3.건전한 학생활동을 위한 자치기구이외의 조직이나 단체를 임의로 구성할 수 없다.
- 4.실정법 위반행위를 할 수 없다.
- 5.불법 시설물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불법 점거, 임의사용, 임의대여 등을 할 수 없다.
- 6.학교 기물을 파손, 파괴해서는 안 된다.
- 7.확성기, 악기 및 고성방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안 된다.
- 8.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내에서 판매 및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.
- 9.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.
- 10.학우 간에 폭력, 폭행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1.도박 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2.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
- 13.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4.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.
- 15.생활관을 제외한 교내에서 숙박, 취사를 할 수 없다.(신설 2018.3.1.)
- 16.흡연은 지정된 장소 외에 할 수 없다.(신설 2018.3.1.)

제 3 장 학생증

- 제3조(학생중교부) ①입학 절차를 마친 신입생, 복학생, 편입생은 우리 대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.
 - ②학생증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제한)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변조할 수 없다.

제5조(휴대의무)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시설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

제6조(분실신고 및 재교부)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(신설 2018.3.1.)

제7조(유효기간)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삭제 2018.3.1.)

제 4 장 집회 및 행사 (변경 2018.3.1.)

- 제9조(적용범위) 이 장의 규정은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단체나 학생이 집회 및 행사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.(변경 2018.3.1.)
 - 1.전교 단위의 학생 간행물
 - 2.단과대학 단위의 학생 간행물
 - 3.학부(과) 단위의 학생 간행물
 - 4.동아리 단위의 학생 간행물
 - 5.기타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간행물
- 제10조(절차) ①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단체나 학생이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 및 행사예정 7일전까지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, 주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집회 허가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또는 단체행사 허가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학생회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, 주임교수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.(변경 2010.3.1., 2018.3.1., 2022.3.1.)
 - ②타 학교 또는 외부 단체와의 연합 행사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(변경 2010.3.1., 2022.3.1.)
 - 1.시안 및 예산서 1부
 - 2.지도교수 또는 학부장, 주임교수 의견서
 - ④학생처장은 수업 및 학내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행사나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간행물 발간 또는 배포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(변경 2010.3.1., 2018.3.1., 2022.3.1.)
- 제11조(예산) ①모든 학생 간행물의 발간 또는 배포 경비는 해당 단체 혹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.
 -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2조(간행물 발간지도) 간행물의 편집, 인쇄, 예산집행 및 배포 등은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,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.

제 5 장 학생 홍보물 제작 및 게시

- 제13조(적용범위) 학생 홍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각종 광고, 공고 및 기타 게시물과 현수막을 말한다.
 - 1.전교생, 단과대학 및 학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, 예술, 체육행사에 관한 홍보물
 - 2.단과대학, 학과, 학생단체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
 - 3.우리 대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다수 학생들의 친목행사(고교 동문회, 학우회 등)의 홍보물 4.기타 타인에게 특정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한 모든 학생 홍보물
- **제14조(홍보물 게시신청)** (조명 변경 2023.3.1.) 교내에 홍보물(현수막, 각종 공고, 전단)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게시신청서를 제출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.(변경 2010.3.1., 2022.3.1., 2023.3.1.)
 - ②(삭제 2023.3.1)
- **제15조(홍보물 게시 기준)** (조명 변경 2023.3.1.) 홍보물의 게시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게시물 관리규정에 따른다.(변경 2010.6.1., 2023.3.1.)
 - 1.(삭제 2010.6.1)
 - 2.(삭제 2010.6.1)
 - 3.(삭제 2010.6.1)
 - 4.(삭제 2010.6.1)
 - 5.(삭제 2010.6.1.)
- 제16조(보호 및 책임) ①게시절차를 거쳐 부착 또는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철거 및 오손하였을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.(변경 2023.3.1.)
 - ②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.

제17조(삭제 2023.3.1.)

제 6 장 대외경기 및 행사참가

- **제18조(참가승인)** 학생이 대외경기 및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변경 2010.3.1., 2022.3.1.)
- 제19조(학생동원) 대외경기 및 행사에 단체로 동원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생준칙규정, 학생준칙규정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집회허가신청서

집 회 허 가 신 청 서										
	지도교수	학부(과)장	학 장				5	당 당	팀 장	처 장
경 유									전결	
단 체 명										
목 적										
일 시		2 0	년	월	일	:		부터		
		2 0	년	월	일	:		까ㅈ	(일간)
장 소										
참석인원		학 생			명	교직	원			명
초청강사		소 속				성	명			
참가단체		교 내				교.	외			
/ 천 보〉										

- * 세부계획서 1부
- * 홍보물 각 1부 (미제작시 생략 가능)

(타 학교 또는 외부 단체와의 연합 행사인 경우 참가교 및 외부 단체 현황 추가 제출)

위와 같이 집회(행사)를 하고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오니 허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학생) 대학 학부(과) 학년 (학번:)

성 명

연 락 처

지 도 교 수 대학 학부(과)

<u>(P</u>)

성 명

연 락 처

명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 단체행사허가신청서 (신설 2018.3.1., 2022.3.1.)

경 유	지도교수	학	부(과)장	항	장				담당	팀장	처장	
								결 재				
단 체 명						행사명						
행사일시												
	행사장소											
참가인원			학생 총 명 1학년 : 명. 2학년 : 명				레이/이스/그 시			성명		
			1약년 3학년			책임(인솔)교수			연락처			
허가자 (서명 또는 날인)			주임교		(인)	※ 동행하는 교수가 없을 경우 행사를 승인할 수						
			지도교		(인)	없슽	없습니다.					
안전 확인 사항			금주/폭	언)관	변지도여부	이행() 불이행() 확인자 : 책임교수 (인)						
			이동수 ※선박, (시간	이용시	사항 ○) 편명	대중교통, 전세버스, 선박, 항공, 기타 ※선박/항공 이용시 출발 : (편명 :) 도착 : (편명 :)						
			전세버.		۰Ó۱	정기			(편명 : 검사서 확인 량연식은5년) 안전메뉴얼		
					하세요				이내) 확인			
			숙박시			지자체 확인,	안전점 서 확인	I	배상책임보 가입 확인	안전메뉴얼 확인		
			※확인	함에 〇	하세요							
			개별추	가입(겨부	가입() 미가입() ※교내 보험으로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처리 가능						
			응급사항 대처 확인				행사장 인근 병원명 연락처 :					
			(반드	락처 혹	학보 후 이동)	비상연락보고 : 책임(동반)교수 →학과장 → 학장 →(학생)처장 → 총장						
<u></u> 신	청서 작성시 유의사항	\ <u> </u>	1. 학교	1. 신청서는 행사 1주일 전에 해당부서(학생지원팀)에 제출 1.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안전 메뉴얼을 숙지하시 고,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신청인			학과명	:		학번 : 연락처 :	(학년)	성	명 :	(인)	

붙임 : 1. 행사계획서 1부

- 2. 참가자 명단 1부
- 3. 단체행사 안전확보을 위한 체크리스트 점검표 1부
- 4. 기타(숙박시설-소방안전점검필증,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,지자체안전점검필증 교통안전-차량보험가입증권) 각1부.